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사무국장 : 정금자, 연락처 : 011-9764-2144, EMail : f2000@dreamwiz.com

수신 :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참조 :

발신 :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제목 :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와 그들 가족들을 위한 인권보호대책을 요구하며.

인권정보자료실
Ma.f.12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지원을 바랍니다.

1. 이주노동자 가족의 인권현황

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부부들 대다수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있는지 추산 조차 되지 않고 있다.

1998년 국적법 개정 이후 국제결혼이 이처럼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 가족과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하나 없이 이들 가족들을 일상적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다.

한국인 처와 자녀를 부양하며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라 하여 무조건 '단속, 추방, 규제'라는 비인권적인 출국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남은 가족들이 생계 곤란과 이산으로 인한 한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의 삶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다.

이에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의 가족과 아동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노동자들 대다수가 한국에 산업연수생, 관광비자, 초청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로서 체류기간을 넘긴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라는 점이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로 단속과 강제추방의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가정은 단속이 실시되는 기간에는 외출조차 금지하고 지내고 있어, 한국식 안네의 일기와 다름이 없는 생활 상태이다.

더욱이 대다수 이주노동자 가정의 어린이들은 취학전 연령으로 부모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강제추방에 대한 위협과 불안정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

둘, 입국금지 및 체류 규제 조치

한국에서 강제추방되거나 자진출국한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란 매우 어렵다. 과거 불법체류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법무부는 1년 ~ 2년간의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법무부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 가족이 헤어져 살 수 밖에 없다.

설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할지라도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체류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국내에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

출입국관리소는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의 비자 발급 및 연장에 관한 체류 심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 가. 당사자 쌍방간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합법적인 결혼으로 실제로 동거생활을 하고 있을 것
- ☞ 나. 국민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있을 것 *한국어로 생활능력!!*
- ☞ 다. 과거 범법사실이 없을 것 *한국어로 범법사실!!*

출입국관리소의 내부지침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에 제출해야만 한다.

- ① 혼인신고 서류
- ② 3천만원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 ③ 과거 범법사실이 없을 것(과거 불법체류자도 범법사실에 들어감)

이상의 조건들은 살펴보면,

- ① 경제적 능력의 입증 문제이다.

출입국관리소는 3천만원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그 배우자의 체류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 가족의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계층적 차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 ② 과거 범법사실의 문제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재입국한 이주노동자일지라도 과거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국내에서 단기 체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3개월마다 해외를 오가며 비자를 연

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이와 같은 문제로 민원을 요청하는 가족들에게 “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해줄 수 없으니, 불법체류하던가 아니면 외국에 갔다오던가” 하라며 행정편의주의 답변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무부의 지나친 입국규제 및 체류 규제는 한국인과 결혼한 미등록체류자의 가족과 아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일부에서는 위명여권을 사용하면서 까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길을 찾고 있어 그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 배우자 비자(F-2 비자) 발급 거부 정책

법무부는 혼인신고 후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국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F 1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배우자 비자인 F 2 비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는 반면, F 1비자는 국내에서 임시방문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출입국관리소에는 외국인 남편이 할 일 없이 국내에 오래 거주하면 불법취업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불법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체류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서 조차 배우자 비자(F 2비자)를 거부함으로써 국제결혼한 가정을 영원한 관광객으로 취급하고 있어 개정된 국적법의 실제적 실행을 전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넷, 미등록체류자의 혼인신고 절차의 문제

현재 한국인과 동거중인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들 대다수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98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 여성도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고 국제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와 결혼하는 한국인은 혼인신고와 관련한 혼인신고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경우, 미등록체류자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며, 합법적체류자일 경우에도 5~6개월간의 양국간의 서류심사를 걸쳐야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때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요구하는 혼인신고 서류를 살펴보면, 개인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상태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혼인신고 조차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로 중국동포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은 혼인신고에 대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아빠 있는 미혼모의 아이들”처

럼 되고 가고 있다. 더욱이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한국에서 강제추방당할 경우 가족이 재결합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 아이들의 아빠를 강제추방하지 말라.
-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강제추방한 남편을 돌려달라.
- 우리는 3개월마다 해외여행 갈 수 없다. 함께 살 수 있도록 거주권을 보장하라.
- 우리 아이 아빠이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수 있게 하라.
- 혼인신고 하자는데 3천만원 재산조사 웬말이냐!
- 체류허가 3천만원 재산조사 철폐하라.
- 아이 아빠는 일하고 싶다. F 2 비자 발급해라.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

2.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 가족들 현황 - 정미숙, 장미영, 바렛데완, 등등

정미숙씨 가족 ✓

1992년 3월 쥬베르 칸(1971) 단기비자로 한국 입국

1996년 5월부터 동거

1997년 쌍둥이 정우빈, 정다빈 출생

1999년 5월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위명여권으로 출국

1999년 8월 입국

1999년 8월 19일 혼인신고

2000년 1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위명여권 사용)으로 강제퇴거

2000년 2월 ~ 3월 법무부에 입국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 2회 제출

현재 법무부는 입국을 허가할 수 없음을 2회 통고

장미영씨 가족 ✓

“여전히 주권 100% 출입국권을 갖게하지 않으셨어” “국회에서 입국·거주·노동·세금·가족 같은 권리”
“국회 법적 조치를 거쳐온 100% 출입국권을 갖게되었어” “국회 법적 조치를 거쳐온 100% 출입국권을 갖게되었어”

1997년 12월 15일 사이둘 이스람 수엘(국적, 방글라데시)와 혼인신고
2000년 3월 단속에 걸려 강제출국. ~~Wangladehi~~
둘 사이에 딸 장루미(5살)가 있음.

박○원씨 가족

부인 미얀마 여성, 단기비자로 입국

부인(국적, 미얀마)과 사이에 자녀 2명

현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미얀마에서 여성의 국제결혼이 금지되어 있어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미얀마에 입국시 출국이 금지된다. 박○원씨의 부인은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자로 단속시 강제출국 대상자이며, 미얀마에서는 혼인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미얀마 입국과 동시에 한국으로 출국이 금지된다.

림부씨 가족

1992년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

1996년 아들 박○요 출생, 미혼모로 입적

2000년 현재 '불법체류자' 문제로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음.

비나구름

1990년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

1995년 한국인 여성 서○지씨와 동거

1996년 딸 서○지 출생, 미혼모로 입적

2000년 4월 자진출국기간에 네팔에 가서 혼인신고와 체류자격을 변경할 예정임.

현재 네팔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불법체류한 경험자라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받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가족이 함께 출국할 예정임.

고빈타 라이

1992년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

동거시기

2000년 3월 딸 출생

2000년 4월 자진출국기간에 한국에서 출국하여 네팔에 입국할 예정임

고빈타 라이씨는 부인과 자녀를 동반하여 네팔에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임. 고빈타 라이씨네 가족은 한국에 입국하여도 3개월간의 짧은 체류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인하여 네팔에서 아이가 클때까지 거주할 계획임.

구마

국적 : 네팔

1992년 단기비자로 입국

1998년 황○자씨와 동거

2000년 4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자녀계획을 미룸.

송○일

국적 : 중국

1997년 중국에서 한국인 여성 장○정을 만남 교제

1998년 한국에 초청비자로 입국

1998년 11월 딸 출생, 미혼모로 입적

2000년 현재 혼인신고 절차(소요 기간 5~6개월임) 문제와 한국에 재입국 문제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에서 강제퇴거 당한 쥬베르 칸의 부인 정미숙씨의 글입니다.]

저는 파키스탄 남편 쥬베르 칸과 쌍둥이 두 아이들을 두고 있는 성남에 사는 정미숙이라는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가정에 처한 일 때문에 어렵게 정말 너무도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96년에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비자가 없는 불법체류 상태인지라 전 아이들을 미혼모의 아이들로 서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아빠가 살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그 점 때문에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남편은 언제까지 이 땅에서 불법체류자로 살아갈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 때문에 늘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단속기간에 걸려, 한국에서 강제추방 당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찌나? 쌍둥이 우리 아이들을 아내 혼자서 어떻게 키우나? 결국 내가 추방당하면 헤어져 살든지 아니면 파키스탄에 함께 가서 살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음식에 한국말을 배우며 자랐는데, 전쟁도 끝나지 않은 나라에 데려가서 고생이나 시키는 것 아닌지? 남편은 이런 걱정으로 어린이집을 오가며, 공장을 오가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 여권을 바꾸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위조하여 파키스탄에 출국하여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꿈에도 그리던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

그후 99년 11월경에 비자를 연장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소의 조사를 받던 중 여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현재 남편은 한국에서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출입국에서는 왜 여권을 위조했냐고 저희 남편에게 여러 차례 훈계를 하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법을 어긴 것은 정말이 잘 못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은 여권을 위조하지 않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정말이 그 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자라나는 쌍둥이들을 볼 때마다, 더 이상 불법체류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설사 그렇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체류기간도 3개월 밖에 허가되지 않아, 해외를 오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쌍둥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그 많은 경비를 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지난 1월 18일 남편은 한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쌍둥이들도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한국에서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도 힘이 들었기에 아이들도 같이 파키스탄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랑스런 아이들까지 없는 이곳에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남아 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날들이 길어질까 사뭇 걱정이 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남편이 한국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전 모든 힘 달게 뛰어 다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남편의 입국규제 때문에 법무부에 탄원서와 그 외 서류를 준비해 찾아 갔었습니다. 입국심사과에 계시는 담당 분을 만나뵙고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우편을 통해 받아 본 답은 여권을 위조했기에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남편과 사랑스런 두 아이들과 함께 서로 아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쥬베르 칸에 대한 법무부 장관님의 입국심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3.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일정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발족식

장 소 : 한국유네스코관 ~~“유네스코관”~~

일 시 : 4월 16일 ~~음력~~ 1시

오는 길 : 2호선 을지로 입구역 6번 출구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